

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-1호

우편업무취급세칙(우정사업본부 훈령 제582호) 제3조,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-43호) 제5조 및 제주지방우정청내 우체국의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(제주지방우정청 훈령 제130호)에 따라 점심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와 창구업무 취급시간, 점심휴무 시간,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7년 4월 6일

제주지방우정청장

점심시간 휴무관서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 등에 관한 고시

총괄국	대상국	창구업무 취급시간		점심 휴무시간	시행일
		우편	금융		
제주 우체국	제주우도우체국 제주고산우체국 협재우체국	09:00~12:00 13:00~18:00	09:00~12:00 13:00~16:30	12:00~13:00 (1시간)	기시행 (2016.7.1)
	신창우체국	09:00~12:30 13:30~18:00	09:00~12:30 13:30~16:30	12:30~13:30 (1시간)	
	조천우체국	09:00~12:00 13:00~18:00	09:00~12:00 13:00~16:30	12:00~13:00 (1시간)	2017.6.1.
서귀포 우체국	서귀포효돈동우체국 서귀포예래우체국 서귀포대륜우체국	09:00~12:00 13:00~18:00	09:00~12:00 13:00~16:30	12:00~13:00 (1시간)	기시행 (2016.7.1)
	서귀포안성우체국 안덕우체국	09:00~12:30 13:30~18:00	09:00~12:30 13:30~16:30	12:30~13:30 (1시간)	
	서귀포고성우체국	09:00~12:00 13:00~18:00	09:00~12:00 13:00~16:30	12:00~13:00 (1시간)	2017.6.1.

부 칙

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제주지방우정청 고시 제2016-2호(2016년 5월 4일)는 폐지한다.